

(2016. 8. 30.)

定 款

1977.04.11. 제정	1998.05.01. 개정	2008.02.18. 개정
1977.09.21. 개정	1998.10.21. 개정	2008.11.26. 개정
1979.01.15. 개정	1999.03.17. 개정	2009.02.24. 개정
1981.04.16. 개정	1999.08.20. 개정	2009.11.11. 개정
1981.12.16. 개정	2000.02.25. 개정	2010.03.01. 개정
1982.04.08. 개정	2000.08.07. 개정	2010.12.09. 개정
1983.08.12. 개정	2000.09.27. 개정	2011.03.01. 개정
1983.10.19. 개정	2001.01.27. 개정	2011.04.18. 개정
1985.01.16. 개정	2001.03.28. 개정	2011.04.20. 개정
1985.11.16. 개정	2001.12.11. 개정	2011.11.01. 개정
1986.06.28. 개정	2002.02.23. 개정	2012.02.21. 개정
1988.02.26. 개정	2002.06.04. 개정	2012.05.25. 개정
1988.08.29. 개정	2003.03.11. 개정	2012.07.22. 개정
1990.04.03. 개정	2003.04.02. 개정	2012.08.30. 개정
1992.07.24. 개정	2003.09.17. 개정	2012.12.28. 개정
1993.04.07. 개정	2004.02.21. 개정	2013.03.01. 개정
1993.12.18. 개정	2004.05.20. 개정	2014.02.06. 개정
1994.03.05. 개정	2004.12.30. 개정	2014.04.24. 개정
1995.12.22. 개정	2005.04.21. 개정	2014.08.01. 개정
1996.02.28. 개정	2006.02.23. 개정	2015.04.23. 개정
1996.09.21. 개정	2006.04.24. 개정	2016.05.01. 개정
1997.01.11. 개정	2007.05.14. 개정	2016.05.19. 개정
1997.10.31. 개정	2007.10.19. 개정	2016.08.30. 개정
1998.03.01. 개정	2008.01.01. 개정	

학교
법인 동명문화학원

학교법인 동명문화학원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대한민국 교육의 근본 이념에 입각하여 보통교육 및 고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학교법인 동명문화학원(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설치 학교)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 학교를 설치·경영한다. (개정 2008.11.26., 2011.3.1.)

1. 부산항만물류고등학교
2. 동명대학교

제4조(주소) 이 법인의 사무소는 부산광역시 남구 신선로 428에 둔다. (개정 2016.5.1.)

제5조(정관의 변경) ① 이 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변경된 정관은 관할청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갖추어 14일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26., 2012.8.30., 2016.5.1.)

제2장 자산과 회계

제1절 자산

제6조(자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 기본재산은 별도의 대장으로 관리하는 재산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및 기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정하는 재산으로 한다.

③ 보통재산은 제2항에서 정하는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7조(재산의 관리) ①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8조(경비와 유지 방법) 이 법인의 경비는 기본재산에서 나는 과실 및 수익사업의 수입과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절 회계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이 법인의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

다.

- ② 법인회계는 일반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당해 학교의 장이 집행하고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이사장이 집행한다.

제10조(예산 외의 채무 부담) 수지 예산으로써 정한 이외의 의무 부담 또는 권리 포기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1조(세계잉여금의 처리) 이 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세계잉여금은 차입금의 상환과 익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분을 제외하고는 적립하여야 하며, 이 적립금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제12조(회계년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12조의2(예결산 보고 및 공시) ① 이 법인은 매회계년도 개시 전에 예산을, 매회계년도 종료 후 결산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공시를 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의 경우에는 매회계연도 개시 5일 이전에, 결산의 경우에는 매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당해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1년간 공개하여야 한다.

제3절(삭제)

제13조 삭제 (2007.5.14)

제14조 삭제 (2007.5.14)

제15조 삭제 (2007.5.14)

제16조 삭제 (2007.5.14)

제17조 삭제 (2007.5.14)

제3장 기관

제1절 임원

제18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이 법인에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개정 2008.1.1., 2009.2.24.)

- 1. 이사 10인 (이사장 1인을 포함한다)
 - 2. 감사 2인
- ② 학교의 장은 이사로 선임할 수 있다.
- ③ 제1항 제1호의 이사 중 3인은 개방이사로 한다. (개정 2008.1.1., 2009.2.24.)

제19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임기의 반으로 한다.

1. 이사 4년
2. 감사 2년, 다만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③ 이 법인이 경영하는 학교의 장으로 선임된 이사는 학교의 장으로 재임하는 기간 동안 이사로 재임한다.

제20조(임원의 선임 방법) 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 한다. 취임하는 임원의 성명, 나이, 임기, 현직 및 중요경력 등 인적사항을 대학교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해야 한다.

- ② 임기 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한다. 다만, 자진사퇴의 경우에는 보고사항으로 한다. (개정 2008.11.26.)
- ③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 ④ 임원의 선임은 임기 만료 2개월 전에 하여야 하며 늦어도 임기 개시 1개월 전에 관할청에 취임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0조의2(개방이사의 선임) ① 법인은 개방이사의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재직 이사는 임기만료 3개월전)에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 개방이사 선임 대상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 ② 법인으로부터 추천 요청을 받은 개방이사추천위원회는 30일 이내에 대상인원의 2배수를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동기간 내에 추천이 없을 시에는 법인은 관할청에 추천을 요청한다.
- ③ 삭제 (2007.10.19.)

제20조의3(개방이사의 자격) 개방이사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11.26.)

1.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
2. 「사립학교법」 제22조의 임원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제20조의4 삭제 (2007.10.19.)

제20조의5(개방이사 추천위원회) ① 개방이사를 추천하기 위하여 동명대학교 대학평의원회에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5인으로 하고 그 구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인에서 추천하는 자 : 2인
 2.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 2인
 3.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 1인
- ③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 ④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그 밖의 세부적인 운영사항은 개방이사추천위원회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제21조(임원 선임의 제한) ① 이사정수의 반수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 ②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이사정수의 3분의 1 이상은 교육 경험이 3년 이상 있는 자라야 한다.

- ④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

야 한다.

⑤ 삭제 (2008.11.26.)

⑥ 감사 중 1인은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단수 추천한 자를 선임한다. 다만, 추천 등에 대하여는 제20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1. 관할청으로부터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자

2.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 파면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자

3. 관할청의 요구에 의하여 학교의 장에서 해임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자

제22조(이사장의 선출 방법과 그 임기 등)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이사의 호선으로 선출하여 취임한다.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이사장은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을 겸할 수 없다.

제23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24조(이사장 직무 대행자 지정)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 되었을 때는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 직무 대행자로 지명된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12.2.21.)

제25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 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와 관할 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 상황과 회계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26조(임원의 겸직 금지) ① 이사는 감사 또는 당해 학교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

② 감사는 이사장, 이사 또는 학교법인의 직원(당해 학교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포함한다)을 겸할 수 없다.

제26조의2(상근 임원) 법인의 임원중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상근 임원으로 둘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절 이사회

제27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개정 2008.11.26., 2011.4.20., 2012.5.25., 2016.5.19.)

1. 학교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6.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
7. 수익 사업에 관한 사항
8.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8조(이사회의 개회 및 의결 정족수 등)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정수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8.11.26.)

③ 이사회의 회의는 이사가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의 방식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6.8.30.)

[제목개정 2016.8.30.]

제29조(이사회 의결 제척 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및 학교의 장의 선임과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 되는 사항

제30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 직무대행 이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30조의2(회의록의 공개) ① 이사회는 회의 종결 10일 이내에 당해 회의록을 대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3개월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학교법시행령」 제8조의2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이사회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사회에서 회의록의 공개여부 및 공개범위 등을 의결하여야 한다.

제31조(이사회의 소집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26.)

1. 재적이사 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5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서 7일 이상 회의 소집이 불가능 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소집권자가 이사회의 소집을 기피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장 수의사업 및 사회복지사업 (개정 2009.11.11.)

제32조(수의 사업의 종류) 이 법인이 설치하여 유지·경영하는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11.26.)

1. 부동산 임대업
2. 체육, 문화 시설 사업
3. 평생교육사업
4. 주차장업
5. 영상 산업
6. 용역업
7. 기타 각호에 관련되는 부대사업

제32조의2 삭제 (2016.5.1.)

제32조의3(수의 사업체의 주소) 이 법인의 수의 사업체의 주소는 법인 사무소에 둔다. (개정 2016.5.1.)

1. 삭제 (2016.5.1.)
2. 삭제 (2016.5.1.)
3. 삭제 (2016.5.1.)
4. 삭제 (2016.5.1.)
5. 삭제 (2016.5.1.)
6. 삭제 (2016.5.1.)

제32조의4(사회복지사업) 법인은 그 설립 목적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회복지사업을 할 수 있다. (신설 2009.11.11.)

제33조(관리인) ① 제32조에 규정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의 임용, 복무, 보수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제5장 해산

제34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11.26.)

제35조(잔여 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 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청에 대한 청산 종결의 신고가 종료된 후 다른 학교법인이나 기타 교육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귀속된다. (개정 2008.11.26.)

제36조(청산인) 이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해산 당시의 이사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08.11.26.)

제6장 교직원

제1절 교원

제1관 임명

제37조(임용) ①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해 되 그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으며, 고등학교의 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장을 임기 중에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로 한다. (개정 2008.11.26., 2016.5.19.)

② 학교의장 이외의 교원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학교의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해 되, 다음 각호의 범위 안에서 계약조건을 정하여 행한다. (개정 2011.4.20., 2012.5.25., 2016.5.19.)

1. 근무 기간

가. 교수 : 정년까지의 기간.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나. 부교수 : 6년 이내의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다. 조교수 : 4년 이내의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라. 삭제 (2012.7.22.)

2. 급여 : 보수규정에 의한 보수

3. 근무 조건 : 교수 시간 및 소속 학부(계열,과) 등에 관한 사항

4. 업적 및 성과 : 연구 실적·논문 지도·진로 상담 및 학생 지도 등에 관한 사항

5. 재계약 조건 및 절차 : 근무 기간 종료 후 다시 임용되는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 계약조건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③ 대학교의 부총장, 대학원장, 본부장, 대학본부의 처·실장 및 학(부)장 등의 보직은 교원인 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보한다. (개정 2011.4.20., 2012.5.25., 2014.8.1.)

④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자가 교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임용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계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9.)

⑤ 삭제

[제목 개정 2016.5.19.]

제37조의2(고등학교교원의 공개전형) ①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9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의거하여 고등학교 교원의 공개전형을 시행한 경우 교원공개전형에 응시한 자가 전형 결과 등에 관한 공개를 요구한 때에는 신규채용자가 확정된 후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26.)

② 제1항의 정보공개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내지 제1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8.11.26.)

제38조(기간제 교원) ①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에 의거 교원이 직무를 이탈하여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할 때에는 그 기간 중 당해 교원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08.11.26.)

② 기간제 교원은 임용 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한다.

③ 고등학교의 기간제 교사 임용은 학교의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6.5.19.)

제38조의2(의원면직의 제한) ① 교원의 임용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제3호 및 제

4호의 경우 그 비위 정도가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 따른 파면·해임·강등·정직에 준하는 정도의 징계(이하 "중징계"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제54조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 중인 때
 3. 감사원·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관할청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감사 또는 조사 중인 때
- ② 교원의 임용권자는 교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교원이 제1항에 따른 의원면직의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감사·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③ 제54조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이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징계사건에 우선하여 징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8.30.]

제2관 신분보장

제39조(휴직의 사유)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 내지 제7의2호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26., 2012.12.28., 2016.5.1., 2016.5.19.)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의 휴양을 요할 때
2.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시, 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하게 된 때
6.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국가기관, 재외교육기관(「재외국민의 교육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재외교육기관을 말한다)에 임시로 고용될 때
7.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 7의2. 만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제7호에 따른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한다)을 입양하는 경우
8. 관할청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9.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10. 배우자가 국외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
11.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

제40조(휴직 기간) 교원의 휴직 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11.26., 2016.5.1.)

1. 제3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2. 제39조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 기간은 그 복무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3. 제3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 기간은 3월 이내로 한다.
4. 제39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학위취득의 경우에는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5. 제39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 기간은 그 고용 기간으로 한다.
6. 제39조 제7호 내지 제7의2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해당 교원이 원하는 경우 이를 분할하여 휴직명령을 할 수 있다. 또한, 여교원인 경우 2년의 범위 안에서 그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7. 제39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8. 제39조 제9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3년을 초과할 수 없다.
9. 제39조 제10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 할 수 있다. 다만, 총 휴직 기간은 배우자의 국외근무, 해외유학·연구 또는 연수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10. 제39조 제1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전임기간으로 한다.

제41조(휴직 교원의 신분) ① 휴직 중의 교원은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휴직 기간 중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39조 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 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30일 이내에 복귀를 신고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제42조(휴직 교원의 처우) ① 제3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 기간 중 봉급의 7할을 지급한다. 다만 결핵성 질환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그 휴직 기간 중 봉급의 8할을 지급하며, 공무상 질병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봉급의 전액을 지급한다.
 ② 제39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5할을 지급 할 수 있다.
 ③ 제39조 제2호 내지 제4호와 제6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서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3조(직위의 해제) ①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8.30.)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2.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略式命令이 請求된 者는 제외한다)
4. 금품비위, 성범죄 등 「사립학교법시행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9., 2016.8.30.)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된자가 직위해제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이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개정 2016.8.30.)
- ④ 임용권자는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 3월 이내의 기간대기를 명한다. (개정 2016.5.19., 2016.8.30.)
-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용권자는 능력회복이나 태도개선을 위한 연수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9., 2016.8.30.)
- ⑥ 교원에게 제1항 제1호와 제2호·제3호 또는 제4호의 직위해제 사유가 함께 있을 때에는 제2호·제3호 또는 제4호를 사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8.30.)
- ⑦ 삭제 (2016.8.30.)

[제목개정 2016.8.30.]

제43조의2(면직의 사유) ①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

1.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3.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

4. 정치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한 때

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

② 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사유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6.8.30.]

제43조의3(당연퇴직의 사유) 교원이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하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2를 적용할 때 "공무원"은 "교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6.8.30.]

제44조(보수) 교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 의 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45조(의사에 반한 휴직, 면직 등의 금지) ①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 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③ 교원은 징계 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교원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8.11.26.)

제45조의2(명예퇴직 수당) ① 교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명예퇴직 수당의 지급 대상 범위, 지급액, 지급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 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45조의3(후임자 보충 발령의 유예) 교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근무성적 불량으로 면직되었을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의 발령을 하지 못한다.

제45조의4(정년) ① 대학 교원의 정년은 65세로 하고, 그 이외 교원의 정년은 62세로 한다. 다만, 총장의 정년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09.11.11.)

② 교원은 그 정년이 달한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에 당연히 퇴직된다.

제45조의5(교원 행동강령) 고등학교 교원의 행동강령에 관하여는 「부산광역시 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용한다.

[본조 신설 2015.4.23.]

제3관 교원인사위원회

제46조(교원인사위원회 설치) 교원(학교의장을 제외한다)의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당해 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5.19.)

제47조(인사위원회 기능)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4.20., 2012.5.25., 2012.7.22., 2016.5.19.)

1. 대학교의 장이 교수, 부교수, 조교수를 임용하고자 할 때에 임용 제청 동의에 관한 사항, 교원 상별에 관한 사항

2. 고등학교에 있어서는 교원의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 공개전형의 시행에 관한 사항, 교원의 보직 및 교원의 연수 대상자, 포상 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3. 삭제

4. 기타 학교의 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인사위원회가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 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명 동의 제청을 함에 있어서 전임용 기간 중의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연구 실적 및 전문 영역의 학회 활동

2. 학생의 교수, 연구 및 생활 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

3. 교육 관계 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제48조(인사위원회 조직) ① 인사위원회는 학교별로 학교의 장이 임명하는 7인의 교원으로 구성되며, 대학교의 교무처장과 고등학교의 교감은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11.4.20., 2012.8.30., 2012.12.28.)

② 인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49조(인사위원회 위원장 및 직무) ①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대학교의 경우에는 교무처장이 된다. (개정 2011.4.20., 2012.8.30.)

②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0조(인사위원회 회의 소집 등) ①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학교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1조(회의록 작성) ① 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당해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 날인한다.

제52조(인사위원회 간사 등) ① 인사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약간인을 둘 수 있다.

② 간사와 서기는 당해 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제53조(운영 세칙)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제2절 교원징계위원회

제54조(교원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5인의 위원으로 조직하고 다음 각호의 징계위원회를 둔다.

1. 고등학교교원징계위원회

2. 대학교원징계위원회

②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6.8.30.)

1. 해당 학교의 교원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다.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라.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교원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 (신설 2016.8.30.)

1. 제2항 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이 조 및 제54조의2에서 "외부위원"이라 한다)을 최소 1명 이상 포함할 것

2. 외부위원은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소속된 사람이 아닐 것

3. 해당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제목개정 2016.8.30.]

제54조의2(외부위원의 임기 등) ① 외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외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60조의3에 따른 비밀누설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본조신설 2016.8.30.]

제55조(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및 직무) ①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개정 2008.11.26.)

③ 교원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6조(징계 의결의 기한)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 의결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

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7조(제척 사유)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은 그 자신에 관한 징계 사건을 심리하거나 피징계자와 친족 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 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57조의2(위원의 기피 등) ① 징계대상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 신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제57조에 따른 제척 또는 제1항에 따른 기피로 교원징계위원회의 출석위원이 재적 위원의 3분의 2에 미달되어 징계 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수가 재적위원 수의 3분의 2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의 임명권자 또는 위촉권자에게 임시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8.30.)

제57조의3(징계 의결 요구 사유 통지) 교원의 임용권자가 교원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 의결 요구와 동시에 징계 대상자에게 징계 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9.)

제58조(진상 조사 및 의견의 개진)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 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 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징계 의결을 할 수 있다.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9조(징계 의결) ① 징계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하여야 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 사건을 심리하고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주문과 사유를 기록한 징계 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임용권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9.)

③ 임용권자가 제2항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 내용에 따라 징계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임용권자가 범인인 때에는 징계 처분권을 이사장에게 위임하고 징계 처분권자는 징계 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당해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 2016.5.19.)

④ 교원징계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60조(징계 의결시 정상 참작 등)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 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 대상자의 소행, 근무 성적, 공적, 개전의 정, 징계 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60조의2(징계 사유의 시효) 교원 징계 의결의 요구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 유용의 경우에는 5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개정 2012.8.30., 2016.5.1.)

제60조의3(비밀누설의 금지) 교원징계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6.8.30.]

제61조(교원징계위원회의 간사 등) ① 교원징계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약간인을 둘 수 있다.

② 간사와 서기는 교원징계위원회가 설치된 당해 기관 소속 직원 중에서 그 임명권자가 임명한다.

제62조(운영 세칙) 교원징계위원회가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절 (삭제)

제63조 삭제 (97.10.31)

제64조 삭제 (97.10.31)

제65조 삭제 (97.10.31)

제66조 삭제 (97.10.31)

제67조 삭제 (97.10.31)

제68조 삭제 (97.10.31)

제69조 삭제 (97.10.31)

제70조 삭제 (97.10.31)

제71조 삭제 (97.10.31)

제72조 삭제 (97.10.31)

제73조 삭제 (97.10.31)

제74조 삭제 (97.10.31)

제75조 삭제 (97.10.31)

제76조 삭제 (97.10.31)

제4절 사무직원

제77조(자격)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직원(이하 “일반직원”이라 한다)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6.5.1.)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이 법인과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해임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 일반직원의 신규 임용에 있어서는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기술직은 임용될 직종에 관한 자격증, 면허증,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로 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인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6.5.1.)
③ 재직 중인 일반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제78조(임용) ① 일반직원의 신규임용, 승진, 근속승진, 승급, 대우직원 선발, 전직, 전보, 겸임, 파견,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이하 “임용”이라 한다)은 임용권자가 공개 채용, 전형 또는 근무 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4.8.1.)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에 있어서 그 시험 과목,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로 인사 규칙으로 정한다.
③ 일반직원은 이사장이 임용하되, 학교 소속 일반직원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제79조(복무) 일반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79조의2(특별휴가) 고등학교의 장은 10년 이상 재직한 고등학교 일반직원에 대하여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 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장기재직휴가운영지침」에 따른다.

1. 재직기간 10년이상 20년미만 : 10일
2. 재직기간 20년이상 30년미만 : 20일
3. 재직기간 30년이상 : 20일

[본조 신설 2015.4.23.]

제80조(보수) 일반직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 생계비 및 민간인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직무의 난이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적당하도록 직급 및 근속 기간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제81조(신분 보장) 일반직원의 신분 보장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 한다.

제81조의2(정년) 일반직원의 정년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81조의3(일반직원 명예퇴직 수당) ① 일반직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명예퇴직 수당의 지급대상 범위, 지급액, 지급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14.8.1.]

제82조(징계 및 재심 청구) 일반직원의 징계 청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

하되 재심 청구에 관한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다만, 일반직원 징계위원회 및 재심위원회를 법인에 따로 두어야 한다.

제7장 직제

제1절 법인

제83조(법인 사무 조직) ① 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인사무국을 두며, 국장은 2급 또는 3급의 직원으로 보한다.
② 법인사무국에는 총무과, 관재과, 기획과 및 감사실을 두며 각 과(실)장은 4급 또는 5급의 직원으로 보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 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2절 대학교

제84조(총장 등) ① 동명대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에 총장을 둔다.
② 총장은 교무를 통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대학교를 대표한다.
③ 대학교에 부총장을 둘 수 있으며, 교수로 겸보하거나 교원이외의 자로 보할 있다. 부총장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0.3.1., 2010.12.9., 2012.8.30.)
④ 부총장은 총장을 보좌하며, 총장이 사고 또는 궐위시에는 총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5.25.)

제84조의2(직속기구) ① 총장직속기구로 대학교육혁신본부, 국고사업총괄본부, 비서실, 학생군사교육단을 둔다. (개정 2011.4.18., 2011.11.1., 2012.5.25., 2012.7.22., 2013.3.1., 2014.8.1.)
② 본부장 및 실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4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1.4.18., 2011.11.1., 2012.5.25., 2012.7.22., 2014.8.1.)
③ 직속기구에는 필요한 하부조직을 둘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대학교 직제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1.4.20., 2011.11.1., 2012.5.25., 2012.7.22.)
④ 삭제 (2012.7.22.)

제85조(대학 등) ① 대학교에는 대학원, 단과대학, 단과대학에 속하지 않는 학부(이하 “대학 등”이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7.22.)
② 대학 등의 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2.7.22., 2014.8.1.)
③ 대학 등에는 필요한 하부조직을 둘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대학교 직제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2.7.22.)
[본조 제목 개정 2012.7.22.]

제86조(대학본부) ① 대학교에는 교무처, 학생처, 입학·홍보처, 기획처, 사무처를 둔다. (개정 2011.4.18., 2011.11.1., 2012.7.22., 2014.2.6.)
② 각 처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4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하고, 각 처에는 부처장을 둘 수 있으며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4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1.4.18., 2011.11.1., 2012.7.22., 2014.8.1.)
③ 각 처에는 필요한 하부조직을 둘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대학교 직제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1.4.18., 2011.11.1., 2012.7.22.)

④ 삭제 (2012.7.22.)

[본조 제목 개정 2012.7.22.]

제86조의2(산학협력단) ①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산학협력단을 둔다.

② 단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4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4.8.1.)

③ 단에는 필요한 하부조직을 둘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대학교 자체규정 및 산학협력단 정관 등으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12.7.22.]

제87조(부속기관 및 부설기관) ① 대학교에는 필요한 부속기관 및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② 부속 및 부설기관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4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2.7.22.)

③ 삭제 (2012.7.22.)

④ 각 부속기관 및 부설기관에는 필요한 하부조직을 둘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대학교 자체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1.11.1., 2012.7.22.)

⑤ 삭제 (2012.7.22.)

제87조의2(기타기관) ① 대학교에는 필요한 기타기관을 둘 수 있다.

② 기타기관에는 필요한 하부 조직을 둘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대학교 자체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2.7.22.)

제88조 삭제 (2008.2.18.)

제3절 (삭제)

제89조 삭제 (2006.2.23.)

제90조 삭제 (2006.2.23.)

제91조 삭제 (2006.2.23.)

제92조 삭제 (2006.2.23.)

제4절 고등학교

제93조(교장 등) ① 고등학교에 교장 1인과 교감 1인 또는 2인을 둔다.

② 교장은 교무를 통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를 대표한다.

③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며 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94조(하부 조직)

① 고등학교 교무 조직에 부를 두며 부장은 교사로 겸보한다.

② 고등학교에 행정실을 두며 실장은 5급 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4.8.1.)

③ 제1항 및 제2항의 각 부서의 업무분장은 교장이 따로 정한다.

제95조(학교운영위원회) ① 초중등교육법 제3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하며, 학교운영위원회는 동법 제32조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고, 「사립학교법」 제14조 제3항, 제21조 제5항 규정에 의한 추천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한다.

- ② 법인 이사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그 설치 취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 지도한다. 다만, 운영위원회가 건학 이념 구현에 저해되는 운영을 하거나 과행적으로 운영되어 교육 활동 및 학교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당해 학교장을 통해 운영위원회의 자문 결과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당해 학교 교직원 전체 회의에서 2배수로 추천한 교원 중 학교장이 위촉한다.
- ④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제96조(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① 교육 활동 중 발생하는 교원(직원을 포함한다)과 관련된 분쟁 사안을 심의·조정·권고하기 위해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 ② 위원회의 기능,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제5절 정원

제97조(정원) 법인 및 각급 학교에 두는 일반직원의 정원은 각각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다만, 직급별 정원은 직원인사규칙에 별도로 정한다.

제6절 대학평의원회

제97조의2(대학평의원회의 설치) 「사립학교법」 제26조의2 규정에 의거 대학교에는 교육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원회(이하 “평의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97조의3(평의원회의 구성) ① 평의원회는 교원·직원 및 학생을 대표할 수 있는 자, 그리고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하는 12인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단위의 정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11.26.)

1. 교원 5인
2. 직원 3인
3. 학생 2인
4.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2인

- ② 평의원회 구성에 있어서 제1항의 각 구성단위 중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전체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97조의4(평의원회 의장 등) ① 평의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둔다.

- ② 의장과 부의장은 평의원회에서 호선하되, 그 임기는 평의원 임기와 같다.

- ③ 의장은 평의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하고,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제97조의5(평의원의 임기) ①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97조의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② 보선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기간으로 한다.

제97조의6(평의원회의 기능) 평의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호 내지 제5호의 경우는 자문에 한한다.

1. 대학교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대학현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7. 기타 학교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97조의7(평의원의 위촉 및 운영규정) 평의원의 위촉 및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

제8장 보칙

제98조(공고) 이 법인이 법령과 정관 및 기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부산일보에 공고한다.

제99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100조(설립 당초의 임원) 이 법인의 설립 당초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설립 허가 : 1977. 4. 11. 문교부장관)

직위	성명	생년월일	임기	주소
이사장	강석진	1910. 3. 21	4	동구 좌천동 668의 2
이사	강기수	1924.12.15	4	남구 대연동 1731의 1
이사	강정남	1940.12. 3	4	동구 좌천동 668의 2
이사	강석엽	1923. 2. 4	2	동래구 온천동 1213의 13
이사	왕상은	1920. 3. 31	2	중구 대청동 4가 80
이사	김오수	1933. 7. 20	4	남구 대연동 897의 5
이사	박영수	1925. 5. 15	2	남구 남천동 70의 7
이사	강석진	1917.10. 1	2	진구 부전동 272의 1
이사	홍순대	1934. 9. 17	4	서울특별시 중구 광희동 2가 303의 15
감사	현상태	1920. 6. 6	1	진구 부전동 418의 1
감사	강시봉	1934.11.21	2	진구 양정동 104의 22

부칙

(1977. 9. 21. 교육감 변경 인가)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77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 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직원으로 임용된 자 중 제43조 제②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이 정관 시행 이후 6월 이내에 당연 퇴직된다.
- ③ (경과 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사무 조직에 근무하는 사무직원이 이 정관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직원이 퇴직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사무직원의 신규 임용은 그 초과하는 정원이 있을 때에는 채용하

지 못한다.

④ (경과 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1. 2 각 직급에 임용된 자는 이 정관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

(1979. 1. 15. 문교부장관 변경 인가)

이 정관은 197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1. 5. 16. 문교부장관 변경 인가)

이 정관은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1. 12. 16. 문교부장관 변경 인가)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81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② (교직원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대학 교육 기관에 근무하는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 및 일반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당해 학교의 장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다만, 대학 교육 기관의 교원의 임용 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교원 징계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교원징계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에 계류 중인 징계 및 재심 청구 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 (학교의 장 임기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기 없이 임명된 대학 교육 기관의 장의 임기는 이 정관 시행일로부터 가산한다.

⑤ (인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 된 대학 교육 기관의 인사위원회 위원 중 이 정관에 의하여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은 이 정관 시행일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

⑥ (일반직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용되어 근무하는 일반직이 이 정관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반직원이 퇴직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일반직원의 신규 임용은 그 초과하는 정원이 있을 때에는 채용하지 못한다.

부칙

(1982. 4. 8. 문교부장관 변경 인가)

이 정관은 198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3. 8. 12. 문교부장관 변경 인가)

이 개정 정관은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3. 10. 19. 문교부장관 변경 인가)

이 정관은 198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 1. 16. 문교부장관 변경 인가)

이 정관은 198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 11. 16. 문교부장관 변경 인가)

이 정관은 1985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6. 6. 28. 문교부장관 변경 인가)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86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 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이사는 그 임기 만료시까지 이 정관에 의하여 취임된 것으로 본다.

부칙

(1988. 2. 26. 문교부장관 변경 인가)

1. (시행일) 이 정관은 1988 학년도 개시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 8. 29. 문교부장관 변경 인가)

1. (시행일) 이 정관은 198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 4. 3. 문교부장관 변경 인가)

1. (시행일) 이 정관은 1990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 3. 19. 문교부장관 변경 인가)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1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② (교원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원(학교장을 제외한다) 및 일반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③ (교원 징계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교원징계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에 계류 중인 징계 및 재심 청구 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 (인사위원회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전문 대학의 인사위원회 위원 중 이 정관에 의하여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은 이 정관 시행일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

부칙

(1992. 7. 24. 교육부장관 변경 인가)

① (시행일) 이 정관은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 4. 7. 교육부장관 변경 인가)

① (시행일) 이 정관은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 12. 18. 교육부장관 변경 인가)

① (시행일) 이 정관은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 3. 5. 교육부장관 변경 인가)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4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 12. 22. 교육부장관 변경 인가)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5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 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1, 2(제90조 관련)의 규정에 의하여 각 직급에 임용된 자의 정년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1996. 2. 28. 교육부장관 변경 인가)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6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9. 21. 교육부장관 변경 인가)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6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1. 11. 교육부장관 변경 인가)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7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10. 31. 교육부장관 변경 인가)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7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규정) 이 정관 시행 당시 임용된 교원은 개정 전 정관 제37조에 의하여 임면된 것으로 보며 단, 1997년 9월 1일 이후 임면되는 교원은 개정된 정관에 의하여 임면된 것으로 본다.

부칙

(1998. 3. 1. 교육부장관 변경 인가)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5. 1. 교육부장관 변경 인가)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교명 변경에 따른 경과 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동명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동명대학”에 근무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1998. 10. 21. 교육부장관 변경 인가)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8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3. 17. 교육부장관 변경 인가)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9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8. 20. 교육부장관 변경 인가)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9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2. 25. 교육부장관 변경 인가)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0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8. 7. 교육부장관 변경 인가)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0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② (최초로 구성되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 개시 및 만료 시기) 이 정관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학교운영위원회규정에서 정한 임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최초 소집일부터 개시하며, 차기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임기 개시일 전일에 만료된다.

부칙

(2000. 9. 27. 교육부장관 변경 인가)

- (시행일) 이 정관은 2000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1. 27. 교육부장관 변경 인가)

- (시행일) 이 정관은 2001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3. 28. 교육부장관 변경 인가)

- (시행일) 이 정관은 2001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12. 11.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변경 인가)

- (시행일) 이 정관은 2001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2. 23.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변경 인가)

- (시행일) 이 정관은 2002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6. 4.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변경 인가)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2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 조치) 2002.1.1. 현재 재직 중인 교원에게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한 재직 중인 대학교원에 대한 임용 지침을 적용하되, 근무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교수 정년보장
2. 부교수 6년
3. 조교수 3년
4. 전임강사 2년

부칙

(2003. 3. 11.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변경 인가)

(시행일) 이 정관은 2003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4. 2.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변경 인가)

(시행일) 이 정관은 2003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9. 17.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변경 인가)

(시행일) 이 정관은 2003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7조 및 제91조의 개정 규정은 2003년 5월 27일 공포된 법률 제6878호 산업교육진흥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을 위한 산업교육진흥법시행령중개정령이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2. 21.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변경 인가)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4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② (대학 교육 기관의 교원 임용과 관련한 경과 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대학 교육 기관에 근무하는 교원은 당해 학교의 장이 임용한 것으로 본다.

③ (대학 교육 기관의 교원 임용 기간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대학 교육 기관에 근무하는 조교수의 임용 기간은 제37조 제2항의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04. 5. 20.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변경 인가)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4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12. 30.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변경 인가)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4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4. 21.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변경 인가)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5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2. 23.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변경 인가)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1. 폐지되는 동명정보대학교는 2012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 동 학교 및 폐지전에 입학한 학생들에 대하여는 종전의 교육관계법령과 학칙들을 적용하고, 수업·학사 및 학적부 등은 동명대학교에서 관리하도록 한다.

2. 폐지되는 동명대학은 2008년 2월 28일(단, 2년제 과정은 2007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 동 학교 및 폐지 전에 입학한 학생들에 대하여는 종전의 교육관계법령과 학칙들을 적용하고, 수업·학사 및 학적부 등은 동명대학교에서 관리하도록 한다.

③ (학생에 대한 조치)

1. 동명정보대학교의 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그 존속기간 내에 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학생이

있을 때에는 다른 산업대학 또는 동명대학교에 편입학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학생에 해당하는 정원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2. 동명대학의 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그 존속기간 내에 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학생이 있을 때에는 다른 전문대학 또는 동명대학교에 편입학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학생에 해당하는 정원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④ (동명정보대학교 교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동명정보대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직원은 2006년 3월 1일자로 동명대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⑤ (기타) 폐교되는 동명대학 및 동명정보대학교에 기타 필요한 사항은 동명대학교 총장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행사한다.

부칙

(2006. 4. 24.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변경 인가)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6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5. 14.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변경 인가)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7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10. 19.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변경 인가)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7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1. 1.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변경 인가)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2. 18.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변경 인가)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8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11. 26.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변경 인가)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8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2. 24.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변경 인가)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9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11. 11.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변경 인가)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9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2. 26.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변경 보고)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12. 9.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변경 인가)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0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3.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변경 인가)

(시행일) 이 정관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4. 11.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변경 보고)

(시행일) 이 정관은 2011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4. 20.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변경 인가)

(시행일) 이 정관은 2011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10. 27.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변경 보고)

(시행일) 이 정관은 201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2. 21.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변경 인가)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② (학생에 대한 경과조치) 2006.2.23.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인가(교육인적자원부 사립대학지원과-1183)에 의하여 폐지된 동명정보대학교는 개교일로부터 2014년 2월 말일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 동 학교 및 폐지 전에 입학한 학생들에 대하여는 종전의 교육관계법령과 학칙들을 적용하고, 수업·학사 및 학적부 등을 동명대학교에서 관리하도록 한다. 단, 동명정보대학교의 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그 존속기간 내에 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학생이 있을 때에는 다른 산업대학 또는 동명대학교에 편입학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학생에 해당하는 정원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12. 5. 25.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변경 인가)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부칙 제1항의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제84조 제4항, 제84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은 2012년 4월 2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2. 7. 20.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변경 인가)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정관 제84조의2 내지 제87조의2 개정 규정은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임강사 명칭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정관 제37조 개정 시행 당시 종전 정관에 따른 전임강사는 조교수로 직급을 전환한다.

② 전임강사에서 조교수로 전환하는 교원의 재임용은 전임강사 임용기간 만료일에 하고, 재임용시 임용기간은 조교수 임용기간을 적용한다.

③ 정관 제37조 제2항 제2호 내지 제6호에 관한 경과사항은 동명대학교 교원인사규정, 교원업

적평가규정, 교직원보수규정, 전임교원연봉제운영규정 등에서 따로 정한다.

부칙

(2012. 9. 6.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변경 보고)

(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1. 4.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변경 보고)

(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2. 28.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변경 보고)

(시행일) 이 정관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2. 11. 교육부장관 변경 보고)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6조 제1항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생에 대한 경과조치) 2006.2.23.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인가(교육인적자원부 사립대학 지원과-1183)에 의하여 폐지된 동명정보대학교는 개교일로부터 2015년 2월 말일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 동 학교 및 폐지 전에 입학한 학생들에 대하여는 종전의 교육관계법령과 학칙들을 적용하고, 수업·학사 및 학적부 등을 동명대학교에서 관리하도록 한다. 단, 동명정보대학교의 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그 존속기간 내에 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학생이 있을 때에는 다른 산업대학 또는 동명대학교에 편입학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학생에 해당하는 정원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14. 4. 29. 교육부장관 변경 보고)

(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8. 5. 교육부장관 변경 보고)

(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4. 28. 교육부장관 변경 보고)

(시행일) 이 정관은 2015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4. 28. 교육부장관 변경 보고)

(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5. 24. 교육부장관 변경 보고)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휴직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39조 제7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정관 시행 당시 같은 개정

규정에 따른 아동을 입양하고 있는 경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2016. . . 교육부장관 변경 보고)

(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12.8.30., 2016.5.1.)

법인 일반 직원 정원

총 계 (11 명)

일반직 계 11 명

2급	1 명
3급	1 명
4급	2 명
5급	2 명
6급	2 명
7급	1 명
8급	1 명
9급	1 명

(별표 2) (개정 2014.4.24., 2016.5.1.)

학교 일반 직원 정원

가. 부산항만물류고등학교

총 계 (12 명)

일반직 계 12 명

5급	1 명
6급	1 명
7급~9급	10 명

나. 동명대학교

총 계 (140 명)

일반직 계 107 명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술직 계 33 명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